

# 2026년 해양수산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모집공고

해양수산 분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해양수산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해양수산 분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규모:** 총 3개사 내외, 기업 당 2,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지원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 정부지원금:기업매칭금은 8:2로 지원금 2,000만원 지원시 **500만원** 매칭 필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2026.12.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해외 인증 취득 등 맞춤형 판로개척 서비스 자금 지원

## 2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자체 계약 후 사업비 집행
    - \*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건은 정산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수출바우처 및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플랫폼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정\*하여 집행 가능

\* 미등록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리스트: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peform/peformList>
-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리스트: <https://www.mssmiv.com/portal/peform/PeformList>

### <지원 가능 서비스 분야>

지원 분야	예시
<b>해외조사/수출 컨설팅</b>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통번역</b>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수출실무 교육</b>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과정 교육,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특허/지식재산권 /시험</b>	지식재산권 등록, 해외 특허·인증·시험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수출을 위한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서류대행/현지 등록</b>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 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 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AEO 인증 인증획득지원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홍보/광고</b>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브랜드 개발·관리</b>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b>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b>디자인 개발</b>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b>홍보 동영상</b>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b>해외규격인증</b>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응하는 자료로 대체 가능

- 계약 체결 시 서비스 대금을 선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시 세금계산서, 서비스 결과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으며, 총 지원금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일괄 지급

○ 자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 비용 중 부가가치세 등 환급가능한 비용 집행 불가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전시회 참가비의 경우에 한하여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 가능

### 3 제외 대상 및 내용

○ 지원 제외 기업 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65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를 기준으로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4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6. 16.(화)~6. 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https://badabom.go.kr>) 접수
- 신청서류

연번	신청 서류	비고
①	사업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첨부1
②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동의서	첨부2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④	가점 증빙 서류(가점별 적합한 제출서류 제출 필요)	-
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

※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발각될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될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 5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 □ 선정절차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사전검토)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제외대상 검토

\* 진흥원은 사전검토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①진흥원이 요청한 기한 내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②자격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조치

- (서면평가) 사업신청서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최종 선정

## &lt;서면평가 운영 세부사항&gt;

-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단,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업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현황 및 성장성</li> <li>■ 매출·수출경험 등 사업수행 역량</li> <li>■ 기술·제품 경쟁력 및 수출 준비도</li> </ul>	15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해외시장 분석의 적정성</li> <li>■ 제품·서비스의 해외시장 경쟁력 및 차별성</li> </ul>	25
지원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성</li> <li>■ 신청 서비스와 기업 수요의 적합성</li> </ul>	15
활용계획 및 수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li> <li>■ 해외시장 진출·바이어 발굴 등 활용전략의 적정성</li> </ul>	20
성과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계약체결·해외파트너 발굴 등 성과목표의 적정성</li> <li>■ 성과지표의 도전성 및 실현 가능성</li> </ul>	25

-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권장·자율 성과지표는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시

구분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액, 신규 고용창출</li> <li>※ 목표치는 실현가능성과 도전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li> </ul>
권장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유치, 해외특허 등록, 해외 인증 취득, 국내외 포상·수상 실적, 해외 MOU 체결</li> <li>※ 권장지표 목표 설정 시 우대</li> </ul>
자율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기업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자율 제시</li> </ul>

- (가점사항) 가점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시 가점 부여\*(가점 최대 7점)

\* 모든 가점항목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정·등록·인증 등이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

가점 항목	제출서류(필수)	가점 규모
◦ 해양수산신기술(NET),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녹색인증, 혁신제품을 해양수산부에서 취득한 기업	인증서 또는 혁신제품 지정서	2점
◦ 전년도(2025년) 수출실적 1억원 이상 보유 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	2점
◦ 「예비오션스타」 지정 기업	예비오션스타 지정서	1점
◦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서	1점
◦ 해양수산부 R&D 수행결과 '우수' 판정 기업	평가결과 공문	1점

※ 가점은 항목별 최대 1점까지 부여하며, 동일 항목 내 복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가점은 인정하지 않음

## □ 사업 추진절차

구분	일정	세부내용
신청서 접수	~ 6월 중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6월 말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제한요건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서류평가 전 탈락 처리함
↓		
서면평가 및 선정	~ 7월 초	• 제출서류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지급	~ 12월 말	• 수행기관 계약 및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		
최종평가 및 정산	~ 1월 초	•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정산 실시

※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기업은 진흥원에 승인받은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

### □ 선정자의 의무사항

- 진흥원은 사업수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1년간 진흥원이 요청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등 성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함

## 6

## 신청 문의

### □ 사업내용 및 신청 등 문의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담당 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김성현 연구원	02-3460-0354	ksh0930@kimst.re.kr